

2021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일시 · 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

2021년 2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1. 시험일시 : 2021. 8. 21.(토), 10:00~11:40

2. 시험장소

분야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일반 남자	10001~10680	배재고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27 ※ 지하철 : 5호선 고덕역 1번 출구 ※ 버스 : 3412, 340	1 층 대학습관
	10681~11460	구암중	서울시 관악구 성현로 53 ※ 지하철 : 2호선 서울대역 → 2번 출구 → 버스 5513 승차 → 구암중 하차 2호선 봉천역 → 4번 출구 → 마을버스 1번 승차 → 구암중 하차 7호선 송산대 입구역 → 2번 출구 → 마을버스 1번 승차 → 구암중 하차 ※ 버스 : 501, 506, 5511, 5517	2 강 중앙
	11461~12120	덕수고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199 ※ 지하철 : 2호선 한양대역 4번 출구 ※ 버스 : 2012, 2013, 2014, 2222, 302, 410	1 층 시청각실
	12121~12880	송례중	서울시 송파구 위례순환로 429 지하철 : 8호선 장지경 4번출구 버스 : 343, 362, 3012,	시청각실
	12881~13220	송실중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7길 6 ※ 지하철 : 6호선 새절역 3번 출구 6호선 수색역 5번 출구로 나온 후 7715번 지선버스(G) 이용 ※ 버스 : 6호선 새절역 3번 출구에서 은평 10번 마을버스	음 악 실
	13221~13940	송실고		
	13941~14740	신서중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206 ※ 지하철 : 2호선 신정네거리역 4번출구 ※ 버스 : 6657, 6614, 6716, 5712	목 련 관 시청각실
	14741~15460	진관중	서울시 은평구 진관4로 36 ※ 지하철 : 3호선 구파발역 2번 출구 ※ 버스 : 7723, 7211, 704, 708	5 층 시청각실
	15461~16120	신천중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1 ※ 지하철 : 2호선/9호선 종합운동장역(2호선-8번 출구 /9호선-9번 출구), 2호선 잠실새내역 5번 출구 ※ 버스 : 2225, 301, 3217, 3218, 3411, 3412, 3414, 3415, 3422	서관2층 음악실
	16121~16520	청원중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 지하철 : 7호선 마들역 3번 출구 ※ 버스 : 1219, 1137, 146, 1001	과 학 관
16521~17025	청원고			

분야	응시번호	시험장소	소재지 및 교통편	시험본부
일반 여자	20001~20460	청원여고	서울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06 ※ 지하철 : 7호선 마들역 3번 출구 ※ 버스 : 1219, 1137, 146, 1001	과 학 관
	20461~21240	혜성여고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16길 2 ※ 지하철 : 7호선 하계역 1번 출구 ※ 버스 : 1132, 1221, 1224, 100	청 암 관
	21241~22060	목동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2길 68 ※ 지하철 : 2호선 양천구청역 2번출구 ※ 버스 : 5712 ,6515, 6614, 6617, 6624, 6638, 6640	목 동 고 강 당
	22061~22460	봉영여중		
	22461~23160	잠실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35길 130 ※ 지하철 : 2호선 잠실역 7번 출구 ※ 버스 : 342. 3318, 3319, 3412, 4318, 3318,	1 층 도 서 관
	23161~23721	명지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2길 56 ※ 지하철 : 2호선 이대역, 신촌역, 홍대입구역 3호선 홍제역 6호선 새절역, 증산역 ※ 버스 : 7017, 7018, 7019, 708, 7021, 7611, 7612, 7713	명 지 고 연 수 실
40001~40860	명지고			
101단	40861~41501	원촌중	서울시 서초구 사평대로 45길 10 ※ 지하철 : 7호선 반포역 1번 출구 9호선 사평역 1번 출구 ※ 버스 : 3414, 4111, 4212, 4412 142, 360, 401, 640	본관 3층 느티나무홀
경찰 행정	50001~50444	배재중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227 ※ 지하철 : 5호선 고덕역 1번 출구 ※ 버스 : 3412, 340	배재고1층 대학습관

【 시험일 전에 반드시 시험장 위치,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확인 바랍니다.】

※ 시험장소 확인 후 「붙임 파일」을 통해 해당 교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이의신청 기간 : '21. 8. 21(토) 12:00 ~ 8. 22(일) 18:00까지, 원서접수사이트

3. 필기시험 유의사항

↳ 지참품 :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응시표, 신분증(미소지 응시불가), 마스크 착용

가. 시험 당일 **09:20까지** 해당 교실 입실 후, 지정된 좌석에 앉아, 응시표 및 신분증을 책상 우측 상단에 놓고 감독관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07:30 부터 시험장 입실 가능)

※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여유 있게 09:00까지 입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험 전일 까지 시험장소, 교통편,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09:20 이후 해당 교실 입실불가**)

※ **신분증 미소지자 해당 교실 입실·응시 불가**

- 신분증 종류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인쇄된 장애인등록증, 여권(사진 확인 가능해야 함)만 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및 신분증사본(신분증을 찍은 사진 및 복사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나.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 결과자 포함)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연령, 가산점,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의해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임용시험에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는 붙임 3,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참조

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의 기재 및 표기사항은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답안 수정은 응시자 본인이 가져온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 가능하며,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정정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 처리합니다.

라. 응시자는 답안 작성 시 반드시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채(남, 여, 101단)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제도」 시행

마. 필기시험 응시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용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카메라 안경, 이어폰, 스마트워치 등)와 모자를 휴대·착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견된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 휴대폰 등 통신장비는 배부되는 수거봉투에 넣어 시험실시 전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지시에 따라 반입 및 휴대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거나 가방에 넣어둔 경우도 부정행위로 적발

응시자 반입 및 휴대 금지물품의 종류(예시)

- 휴대전화, 노트북, MP3 플레이어, PMP, 전자사전 등 모든 전자기기
 - 교과서, 노트, 연습장, 참고서 등 시험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분증, 응시표, 필기구(컴퓨터용 사인펜, 플러스펜 등), 손목시계(시각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제외) 외의 모든 물품
- ※ 다만, 보청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필요한 물품은 해당 교실 시험 감독관의 사전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

바.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 감독관의 시험 종료시간 예고,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응시자는 개인용 시계를 준비해서, 본인의 시계로 시험시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 가능한 시계 :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

사. 답안지 교체는 시험종료 전까지 가능하나, 시험종료 타종이 울리면, 답안 작성을 즉시 멈추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속 작성 시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시험 전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자제하여 주시고, 시험교실 입실 종료 시간 전에 화장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시험시간 중에는 1회에 한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의 사용 원칙과 절차 등에 따라 유의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 원칙>

1. 사용시간 : 10:30 ~ 11:20 (시험시작 30분 이후 ~ 시험종료 20분 전)
※ 화장실 사용과 관련된 모든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
2. 사용횟수 : 1인당 1회에 한함

<사용 절차> (소음 주의)

1. 시험 중 손을 들어 화장실 사용 요청
※ 화장실 사용자가 많은 경우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
2. 문제지와 답안지를 뒤집은 후 복도로 이동, 복도감독관과 동행하여 이동
3. 응시자 소지품 검사(동성 복도감독관이 실시)
 - ① 주머니를 뒤집어 감독관에게 보여 줌
 - ② 휴대용스캐너(MD)를 이용하여 전자기기 검사 실시
4. 복도감독관이 지정한 화장실 및 용변 칸 사용
5. 화장실 사용 후 복도감독관이 소지품 검사 재실시
6. 복도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해당 시험실 입실

<유의 사항>

1. 사용 시간대 외 및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화장실 사용 시 재입실 불가(관리본부 대기)
2. 시험 관련 자료 등 소지, 화장실 내 시험 관련 내용 기재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적발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가능 시간은 본인 좌석에서 손을 들어 의사표시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규정된 화장실 이용 이외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시 재입실 불가, 시험 종료시까지 시험 관리본부에서 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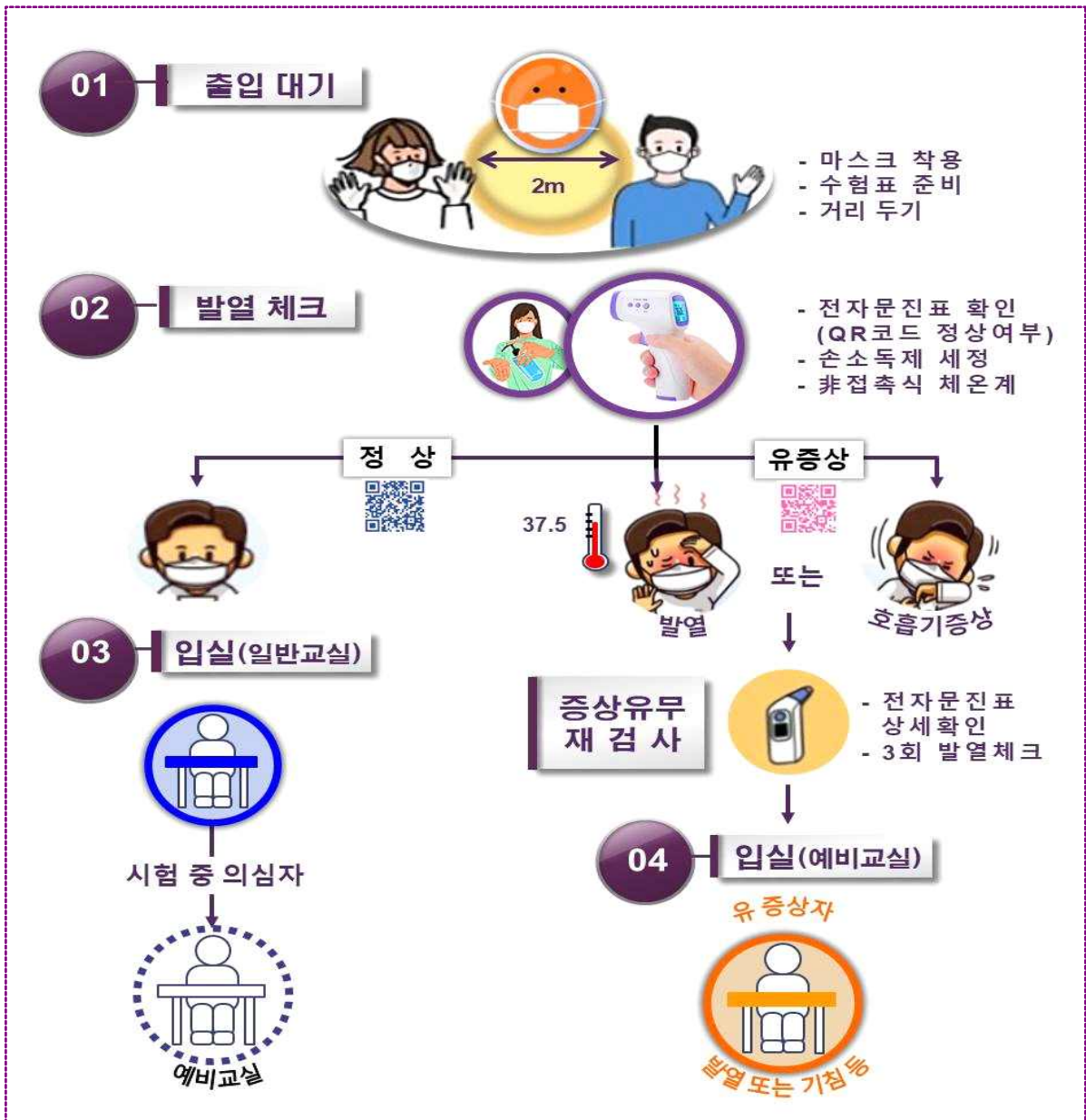
- 자.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퇴실시 감염예방을 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할 예정입니다.
- 차.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공간이 매우 협소 (응시자 차량 출입 통제)하오니,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험장은 학교시설로 금연구역이므로 시험장내에서 반드시 금연하여 주시고, 학교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랍니다.
- 방역 관련 편의시설 이용제한 및 위생 등을 고려, **개인별 음용수를 준비해 오시고**, 시험장 주변에서 친지 등 응원행사를 금지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카.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 가.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및 행동수칙**에 따라 안전한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출입 대기 시 2m 거리두기, 올바른 마스크 착용(코와 입을 완전히 덮음), **전자문진표 QR코드 확인**,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시험장에서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하고, 미착용자는 입실이 불가하니, 예비용 마스크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전자문진표 작성 관련 안내문자는 8. 18(수) ~ 8. 20(금) 문자 메시지로 발송될 예정이니 안내문자를 참고하여 전자문진표를 작성하고(붙임1 참조), 생성된 QR코드 화면을 캡처 저장 후 시험 당일에 주출입구에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붙임2 참조)**

나. 출입구를 일원화하여 모든 응시자는 손소독 및 발열검사를 거쳐야 시험교실 입실이 가능하며, 발열검사 결과 감염의심(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여지가 있는 응시자는 2차 검사 결과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 예비시험실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 출입검사를 마친 응시자는 발열검사 결과에 따라 **검사확인 스티커를 응시표 좌측상단 및 왼쪽어깨 상부에 부착**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스티커 미부착시 출입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스티커가 분실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코로나19 확진자 및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중인 응시자는 보건당국과 협의 등 사전 조치 후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 확진자의 경우 응시를 희망하며, 주치의로부터 응시 가능함을 확인 받은 경우 필기시험은 응시 가능*
* 단, 치료받고 있는 병원 또는 생활치료시설의 1인실을 배정받아야 함
- ▶ 자가격리자는 별도 장소에서 특별시험 실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일반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마.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시험감독관 또는 방역담당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바. 시험 시작 전 및 시험 진행 중 유증상자는 시험이 중지될 수 있으며,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실시될 수 있습니다.

※ 시험 후 다중이 밀집한 시설 및 교통편 이용을 자제하시고, 인접 보건소 등 문의 및 방문을 통해 신속한 코로나 진단검사를 권고

사. 시험장 및 휴식시간 등에도 다른 응시자와 가급적 2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 자제

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자. 다음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즉시 퇴실조치 합니다.

- ▶ 발열검사 등 시험장 출입 전 방역 확인 요구에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 ▶ 감독관의 별도 안내 없이 마스크를 탈의한 경우
- ▶ 그 밖에 감독관이 판단하여 응시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

차.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모바일 전자문진표 관련 수험생 안내 예정 문자**

□ **발송일** ⇨ 8. 18(水) ~ 8. 20(金) 09:00, 3일간

□ **발송 문구**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장 출입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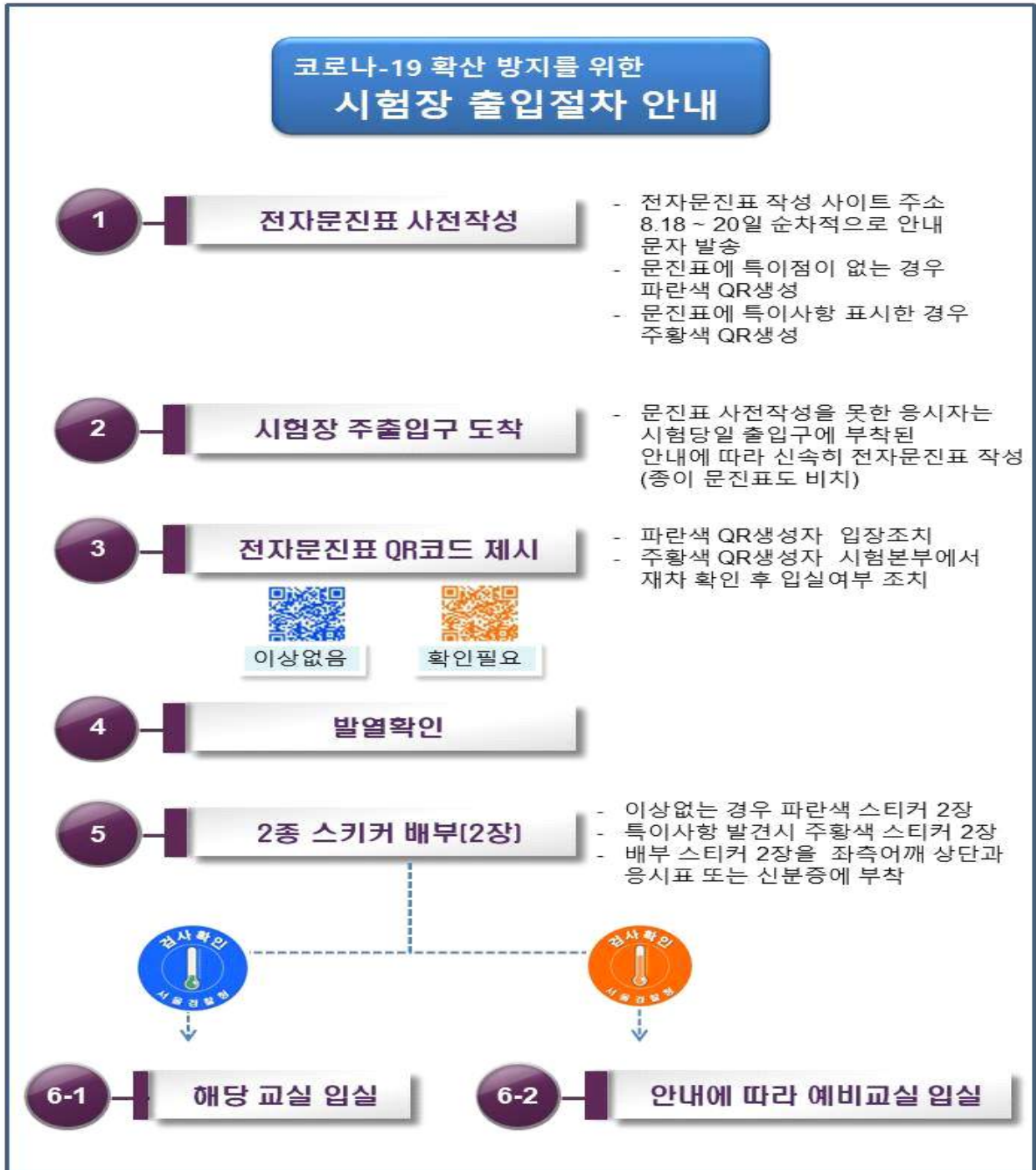
8.21(토) 서울지역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수험생께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체 수험생은 전자문진표를 작성한 후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니, 8.20(금) 18:00까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험생은 아래 주소를 클릭하여 전자문진표를 작성 후 “문진표 제출확인”까지 진행하여 주십시오.(생성된 QR코드 화면을 캡처 저장 후, 시험 당일에 주출입구에서 제시하면 신속한 입장이 가능합니다)

전자문진표 작성 주소 : www.smpa.go.kr/qt

시험장 안내 및 유의사항, 시험장 출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 채용공고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황색 QR' 생성자는 정문 통과 단계부터 일반 수험생과 함께 대기치 말고, 곧바로 주출입구 앞 방역담당관에게 와서 재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전자문진표 사전제출 후, 시험 당일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 또는 시험감독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다른 법령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자격정지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응시표 출력사항 외 시험과 관련된 내용이 인쇄 또는 메모된 응시표를 시험 시간 중 소지하고 있는 경우 당해시험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